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$\left[\begin{smallmatrix} 2020. & 7. & 14 \\ \Xi all & M3670호 \end{smallmatrix} ight]$

일부개정 2025. 5. 13 조례 제4048호 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 및 「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연천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- 제2조(재정 지원) ① 군수는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 - 1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3.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「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 - 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「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5. 5. 13〉
 -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제3조(재정 지원 신청) 제2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 심사)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

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한다.

- 1. 재정 지원의 타당성
- 2. 신청금액의 적정성
- 3. 지원 가능한 예산
- 4.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
- 제5조(사업계획 변경) 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운행실태 점검)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 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- 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「연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5. 5. 13 조례 제4048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									
	성명				생년 ⁻	월일			
신청인	사업체명		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		
사업명칭									
면허종류		[허일자			면허번호				
사업목적									
및 내용									
지 원 을 받 고 자									
현 고 시 하는사유									
사 업 비	총사업비		원		지원받고자 하는 금액		보조:		원
1 1 1					자기자본부담액				원
사업기간									
거래은행	은행명		예금주			계좌번호			
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.									
			년		월	일			
						신청인			(인)
연천군수	귀하								
첨부서류	 보조금 사용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								